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11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임이자 · 박성훈 · 강승규
조지연 · 임종득 · 백종현
이소희 · 이인선 · 박수민
유상범 · 이종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계절적 인력 수요에 현행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새로운 근무처가 해당 계절근로자의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

· 면·동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역 내에 소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전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도 인근 근무처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단서 및 제4
항 신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계절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
 - 가. 근무처가 계절근로자의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면·동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역 내에 소재할 것
 - 나. 고용 기간이 1회당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기존 근무처 사용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것
 - 라. 새로운 근무처 사용자가 고용 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일시 고용의 횟수, 절차, 신고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생략)

<신설>

다. 기존 근무처 사용자의 서
면 동의가 있을 것

라. 새로운 근무처 사용자가
고용 후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
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
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일시 고
용의 횟수, 절차, 신고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령으로 정한다.